

#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관사 인사



법무뉴스

## 1. 개요

- (1) 대법원은 지난 2018. 2. 13.자로 법원장(부산가정법원장 포함) 16명에 대한 보임 및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관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실시하였음. 아울러 2018. 2. 26.자로 인천·대전·광주가정법원장 3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고, 2018. 3. 1.자로 울산가정법원장 1명에 대한 보임 인사를 실시하였음
- (2) 이번 인사에서는 법원장 순환보직제에 따라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던 법원장 중 5명이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고, 현직 법원장 6명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새로 복귀하였음. 그 외 현직 법원장 3명이 희망에 따라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되었음
- (3) 아울러 고등법원 부장관사 9명(16~17기)을 법원장으로 신규 보임하고, 14명(22기 2명, 23기 4명, 24기 8명)을 고등법원 부장관사로 신규 보임하였으며, 14명의 신규 고등법원 부장관사 중 여성법관과 지역계속근무법관은 5명임

- (4) 이번 인사에서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래 고등법원 부장관사 보직이었던 부산·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관사를 지방법원부장관사 보직으로 전환하였음

## 2. 인사요인 및 인사원칙

- (1)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관사 사직, 울산가정법원 신설 등의 인사요인이 발생함
- (2)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함

## 3. 이번 인사의 주요 특징

### (1) 법원장 순환보직제의 안정적 정착

- 대법원은 2012. 2.부터 법원장 순환보직제를 실시하고 있음
- 법원장 순환보직제는 법원장 보임이 마지막 승진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며 법원장이 재판장으로 복귀한 뒤 정년까지 근무함으로써 사법의 본질이 어디까지나 재판임

을 재확인하고 사법행정을 경험한 법원장의 원숙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더욱 충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제도임

○ 이번 인사에서는 2016년, 2017년 정기인사에서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하였던 법원장 5명이 재판부 근무를 마치고 법원장으로 다시 보임되었음

-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14기)⇒ 사법연수원장
-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대전고등법원장
-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광주고등법원장
-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특허법원장
-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또한 법원장 6명이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복귀하였음

- 황병하 서울행정법원장(15기)
- 이승영 서울동부지방법원장(15기)
-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15기)
-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15기)
- 김광태 광주지방법원장(15기)
-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15기)

○ 이로써 2012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42명의 법원장(퇴직자 포함)이 고등법원재판부로 복귀함 ⇨ 법원장 순환보직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됨

**(2) 법원장 1심 복귀 및 원로법관 지명**

○ 복귀 법원장 3명이 원로법관으로 지명되어 1심으로 전보됨

- 이대경 특허법원장(13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13기)⇨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 신귀섭 청주지방법원장(13기)⇨ 대전지방법원

○ 이들 원로법관들은 1심에서 소액사건 등을 담당할 예정임 ⇨ 경륜 높고 원숙한 법관들이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과 국민들의 재판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동시에 복귀 법원장을 비롯하여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원숙한 법관들이 법관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다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여성법관, 지역계속근무법관 등 보임**

○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여성법관과 지역계속근무법관을 새로이 보임함으로써 지역 사회 및 사회적 소수자 등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재판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된 여성법관 지영난 신임 고법 부장판사(22기)
- 김경란 신임 고법 부장판사(23기)
- 김복형 신임 고법 부장판사(24기)

-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된 지역계속근무법관

이흥구 신임 고법 부장판사(22기): 부산 권역 지역계속근무법관

신동헌 신임 고법 부장판사(24기): 대전 권역 지역계속근무법관

**(4)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 축소**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종래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되어 온 부산·광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직을 지방법원 부장판사의 보직으로 전환함으로써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보임을 축소하였음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지방법원 사법행정 보직을 점차 축소해 나갈 계획임

#### 4. 주요 인사 내역

##### (1) 법원장 보임 및 전보

###### ○ 인사 규모

- 전국 법원장 인천 지방권 가정법원장 포함 중 명이 사직 재판부 복귀전보 등에 따라 교체되고 울산가정법원 개원에 맞추어 자로 울산가정법원장 명이 신규 보임됨
- 고등법원장 명 지방법원장 명 인천 지방권 가정법원장 명

###### ○ 신규 보임 현황

- 연수원 기의 재판부 복귀 법원장 명이 고등법원장으로 보임됨  
 성낙송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14기) ⇨ 사법연수원장  
 조해현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 대전 고등법원장  
 최상열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 광주 고등법원장  
 조경란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 특허 법원장
- 연수원 기의 재판부 복귀 법원장 명이 지방법원장으로 연수원 기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명이 지방법원장으로 각 보임됨

-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14기) ⇨ 서울 중앙지방법원장
- 김용석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서울 행정법원장
- 최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서울 동부지방법원장
- 김기정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서울 서부지방법원장
- 윤 준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수원지방법원장
- 김필곤 서울고법 부장판사(16기) ⇨ 대전 지방법원장
- 이상주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 청주 지방법원장
- 윤성원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 광주 지방법원장
- 한 승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 전주지방법원장
- 이동원 서울고법 부장판사(17기) ⇨ 제주 지방법원장
- 1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의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인천·지방권 가정법원장으로 보임됨 (울산가정법원은 개원 예정)  
 최복규 수원지법 부장판사(18기) ⇨ 인천 가정법원장  
 한숙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21기) ⇨ 대전가정법원장  
 구남수 부산고법 부장판사(18기) ⇨ 부산 가정법원장  
 남근욱 대구지법 부장판사(21기) ⇨ 울산 가정법원장  
 고영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장(20기) ⇨ 광주가정법원장

○ 전보 현황

- 연수원 16기의 법원장 1명이 다른 지방법원으로 전보됨
- 최인석 제주지방법원장(16기) ⇨ 울산지방법원장

**(2) 대법원, 법원행정처 등 인사(보임 기준)**

○ 대법원

김환수 특허법원 수석부장관사(21기) ⇨ 대법원장 비서실장

○ 법원행정처

이승한 대전고법 청주부 부장관사(22기)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 사법연수원

성수제 대구고법 부장관사(22기) ⇨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 법원도서관(겸임)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관사(19기) ⇨ 법원도서관장

**(3) 고등법원 부장관사 신규 보임**

○ 보임 규모: 총 14명

- 22기 2명
- 23기 4명
- 24기 8명

○ 신규보임 현황(기수·성명 순)

- 이흥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22기) ⇨ 대구고등법원 부장관사
- 지영난 서울서부지법 부장관사 (22기)⇨ 대전고등법원 부장관사 청주 겸 청주지법 수석부장관사
- 김경란 서울동부지법 부장관사(23기) ⇨ 특허법원 수석부장관사
- 문광섭 서울서부지법 수석부장관사(23기) ⇨대전고등법원 부장관사
- 박연옥 수원지법 평택지원장(23기) ⇨대구고등법원 부장관사
- 이재희 대전지법·가법 천안지원장(23기) ⇨대구고등법원 부장관사
- 권혁중 서울중앙지법 부장관사(24기) ⇨대전고등법원 부장관사
- 김복형 서울고법 고법판사(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관사(춘천)
- 김성수 서울고법 고법판사(24기) ⇨대전고등법원 부장관사(청주)
- 서승렬 서울고법 고법판사(24기) ⇨특허법원 부장관사
- 신동헌 대전고법 고법판사(24기) ⇨부산고등법원 부장관사
- 윤성식 서울중앙지법 부장관사(24기) ⇨특허법원 부장관사
- 이규홍 서울중앙지법 부장관사(24기) ⇨특허법원 부장관사
- 이제정 서울중앙지법 부장관사(24기) ⇨특허법원 부장관사

## 법무매거진

### ‘사법행정권 남용’ 3차 특조단 출범...

#### 원세훈재판 대법관들 조사 가능성

-대법, 안철상 단장 등 6명 구성... 임종헌 前차장 PC개봉도 쟁점-

대법원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를 벌일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을 12일 구성했다. 지난해 4월 진상조사위원회, 올 1월 추가조사위원회에 이은 3번째 자체 조사를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추가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조단은 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61·사법연수원 15기)을 포함해 6명으로 구성됐다. 노태약 서울북부지법원장(56·16기),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58·16기), 정재현 법원행정처 전 산정보관리국장(50·29기), 구태희 사법연수원 교수(38·34기), 김홍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57·17기)이 포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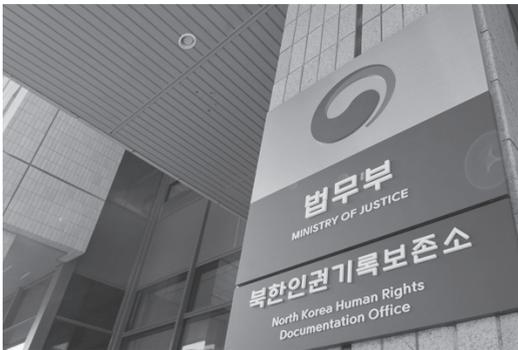
안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59·15기)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2차 조사 때 법원행정처 PC 조사에 반대했다가 김 대법원장에 의해 경질된 김소영 전 처장(53·19기·대법관)의 후임이다. 노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강제 퇴직당했다가 복귀한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차관(58)의 동생이다. 이 의장은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정 국장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김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팀장을 맡았다. 김 윤리감사관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특조단에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상당수 포함되자 구성이 편향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조단은 김 대법원장이 최근 대법관들에게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 기소) 항소심 및 상고심 재판 관련 의혹을 다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 전 원장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당시 심리를 맡았던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를 열어둘 가능성이 있다. 특조단은 2차 조사 대상에서 빠졌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17기)의 컴퓨터와, 암호가 걸려 열지 못한 760여 개의 파일을 공개하는 데에도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아일보 인용)

## 법무뉴스

###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경 수사권 조정안」 권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2017. 10. 30.부터 2018. 2. 5.까지 10차례에 걸친 논의를 거쳐, 검·경 수사권 조정의 방향과 중요 쟁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 관계

- (1)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규정을 삭제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한다.
- (2)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한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기본적 관계가 적정한 형사사법을 위한 상호협력관계임을 명시하는 규정을 둬으로써 두 기관 모두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호 협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백히 한다.

- (3)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관련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적절한 견제·감독기능은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제·감독기능은 형사소송법, 형법 등의 개별 규정들에 의해 인정될 것이다.

#### 2. 검사의 일반적 지시 및 수사요구권

##### (1) 검사의 일반적 지시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 및 사건관계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일반적 수사준칙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시행할 수 있다.

##### (2) 검사의 수사요구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구체적으로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

한 행사는 원칙적으로 문서로 하되, 신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구두에 의하고, 추후 문서로 보완한다.

- ①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에 대한 수사요구
- ② 경찰의 송치사건(재기사건 포함)에 대한 보완수사요구
- ③ 변사사건에 대한 수사요구
- ④ 경찰의 영장 신청시 보완수사요구

(3)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준칙, 지침 등과 수사 요구가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성실히 응해야 한다.

### 3. 경찰의 수사종결권 인정 여부

경찰수사 과정에서의 권한남용 혹은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하여 경찰은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검사가 사건 종결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함이 상당하다.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적 견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 4. 경찰의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및 통제

#### (1)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

-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경찰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하여 법원에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는 국민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경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검사의 영장심사, 긴급체포 승인절차는

현행 규정대로 유지한다.

#### (2) 검사의 영장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및 영장심의위원회

- 검사의 영장기각에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검사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 사법경찰관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각급 검찰청에 설치되는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검사는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3)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사가 아닌 위원을 다수로 하여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한다.

### 5. 검사의 1차적 수사가 인정되는 범위

- (1) 검사의 준사법기관 및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은 일반 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 등에 집중하도록 함이 필요하다.
- (2) 현 상황에서, 검사의 1차적 수사가 인정될 수 있는 분야는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이다.
- (3) 경찰공무원이 관련되어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한 사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위 사건들의 관련 인지사건(무고, 위증 등) 등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다.
- (4) 수사권 조정 관련법령의 개정 이전이라도,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실행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검사의 직접수사범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 및 그 수사범위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으며, 일련의 경찰개혁(실질적 자치경찰제로의 전환, 사법경찰의 전문화와 행정경찰로부터의 자율성 확보 등)의 진행상황과도 긴밀한 연계를 맺고 있음을 확인한다.

## 6. 검사의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

- (1) 검찰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이 제한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면,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그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및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외부적 견제와 감독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 (2) 다음 경우에는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 등의 송부 요구, 시정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아니할 경우 사건의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다.
  - ① 경찰 수사과정에서 사건 관련자의 인권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사건 관련자가 경찰의 편파수사, 과잉수사, 장기·지연수사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경찰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권침해가 자주 문제시되어 온 안보(대공, 테러) 수사, 정치적 중립성이 논란되는 선거 수사 등에 대하여는,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 가능성을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추가적 방안에 관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 7. 검·경 수사권의 경합

- (1) 검사가 1차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서, 동일 사건을 경찰과 검찰이 중복수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 (2) 위 송치 요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할 때 경찰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3) 검·경 수사권의 경합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와 절차를 둔다.

## 8. 유의 사항

- (1) 특별사법경찰관은 일반 행정부처의 직원들이 소관 업무에 관하여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경우이므로 본 권고안 취지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요한다.
- (2)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 각종 수사서류의 증거능력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차원이 아니라, 전체 형사법 체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증거법 차원의 문제이다.

# 김소영 대법관 2부로... 대법원 소부 구성 변경



법조인 동정

대법원이 지난 2월 2일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이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취임함에 따라 대법원 재판부(소부) 구성을 변경했다.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 재판부로 복귀한 김소영(53·19기) 대법관이 안철상 신임 처장이 있던 제2부로 배치되면서 변경 규모가 크지는 않았다.

변경전 <2018년 1월 3일>

재판부	부호	주심
제1부	타	김신
	마	박상옥
	나	이기택
	아	박정화
제2부	카	고영한
	라	권순일
	다	조재연
	자	안철상
제3부	차	김창석
	사	조희대
	가	김재형
	바	민유숙

변경후 <2018년 2월 1일>

재판부	부호	주심
제1부	타	김신
	마	박상옥
	나	이기택
	아	박정화
제2부	카	고영한
	자	김소영
	라	권순일
	다	조재연
제3부	차	김창석
	사	조희대
	가	김재형
	바	민유숙



김소영 대법관은 제2부에서 고영한(63·11기)·권순일(59·14기)·조재연(62·12기) 대법관과 함께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김소영 대법관이 제2부에 배치되면서 제1부의 박정화(53·20기) 대법관, 제3부의 민유숙(53·18기) 대법관 등 각 소부에 여성 대법관이 1명씩 고루 배치되게 됐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제1부 선임 대법관은 김신(61·12기) 대법관이, 제2부 선임은 고영한 대법관이, 제3부 선임은 김창석(62·13기) 대법관이 맡는다.

(법률신문 인용)